

『구미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에 대한 의견제시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(공원)인 꽃동산공원(최초결정 : 건교고524호, 1973. 12. 31.)을 『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』 제21조의2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조성 후 구미시에 기부채납하고
- 남은 잔여 부지에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하고자,
- 구미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제6항에 따른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제안함

3. 주요내용

○ 용도지역 변경

- 자연녹지지역 → 제2종일반주거지역
 - 위 치 : 구미시 도량동 산40-4번지 일원
 - 면 적 : 145,171m²

•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조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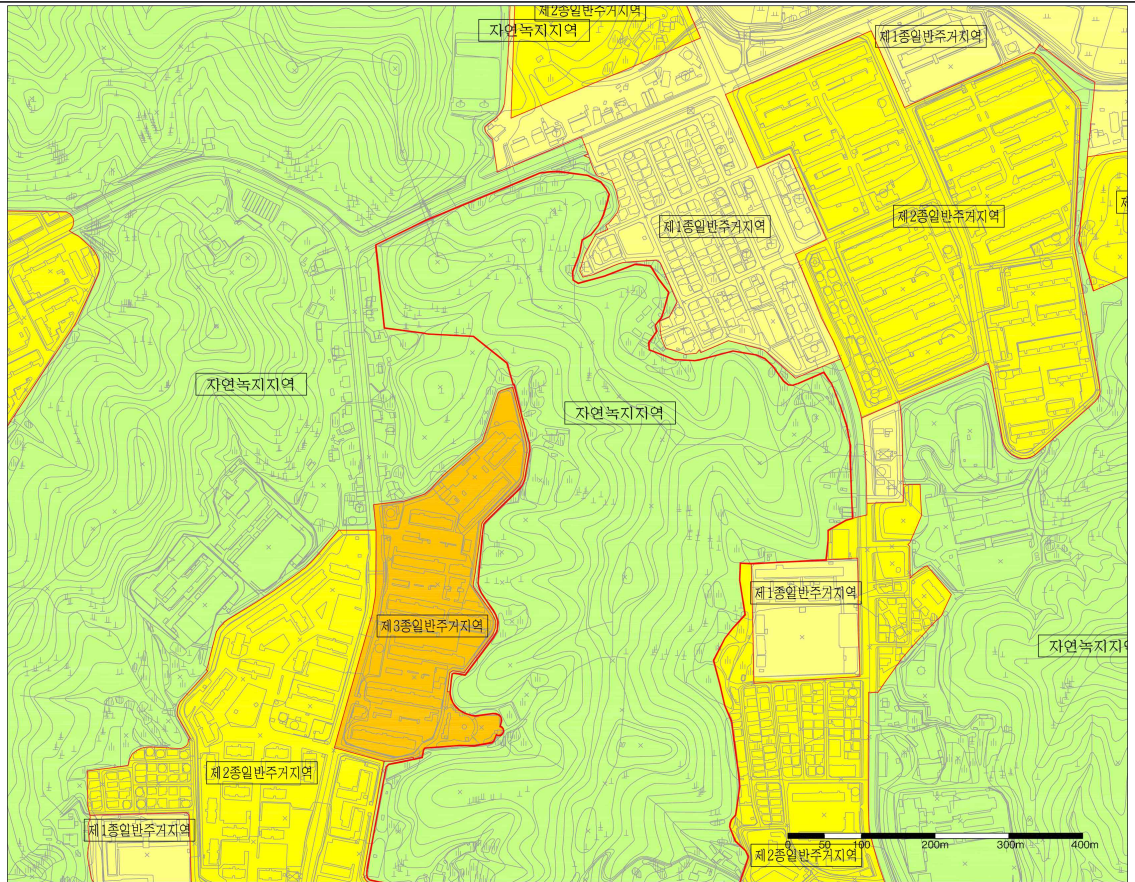
구 분	면 적(m ²)			구성비 (%)	비 고
	기 정	변 경	변 경 후		
합 계	145,171	-	145,171	100.0	
제2종일반주거지역	-	증) 145,171	145,171	100.0	
자연녹지지역	145,171	감) 145,171	-	-	

•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사유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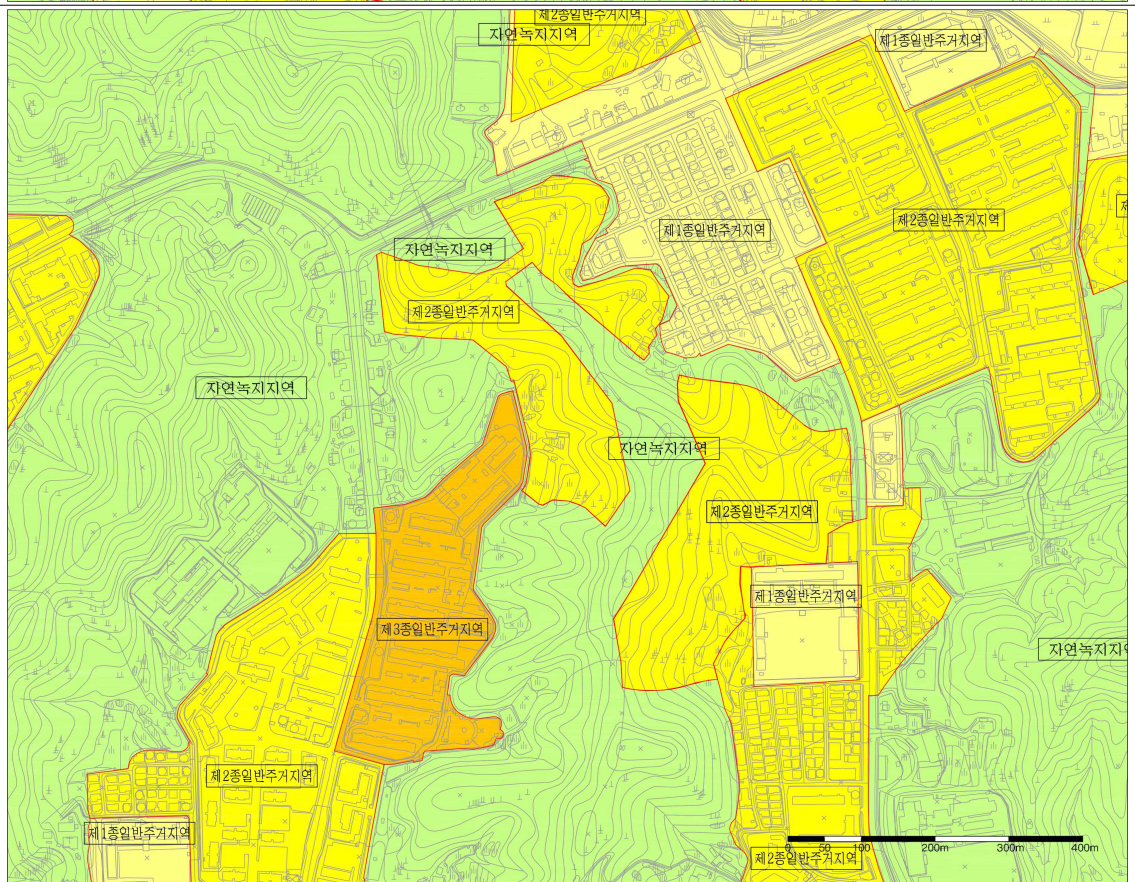
도면 표시 번호	위 치	용 도 지 역		면 적 (m ²)	용적률	변 경 사 유
		기 정	변 경			
가	도량동 산40-4 일원	자연 녹지지역	제2종 일반주거 지역	145,171	250%	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비공원시설부지 내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용도지역 변경

<구미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(안) 도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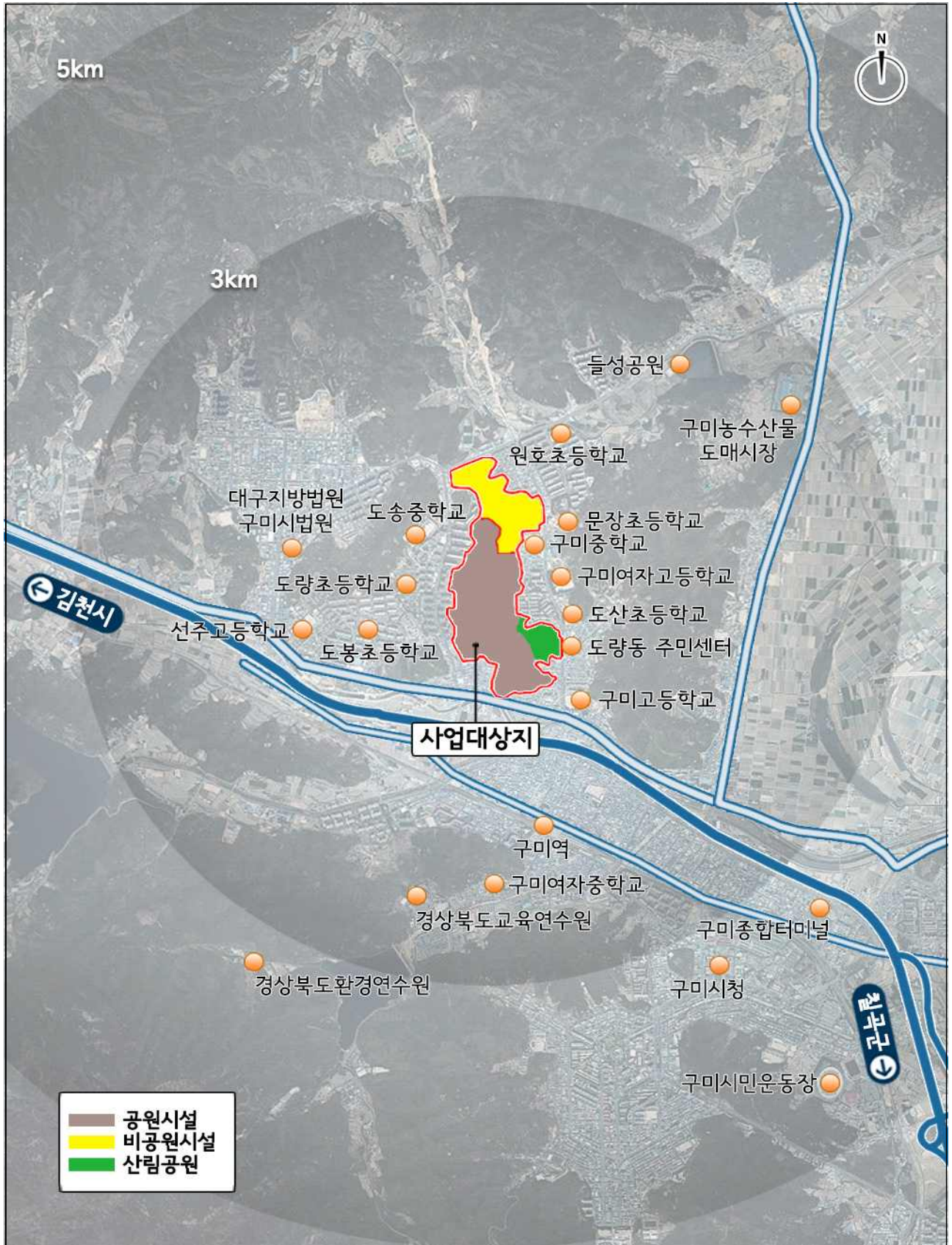
기 정



변 경



○ 위 치 도 (꽃동산공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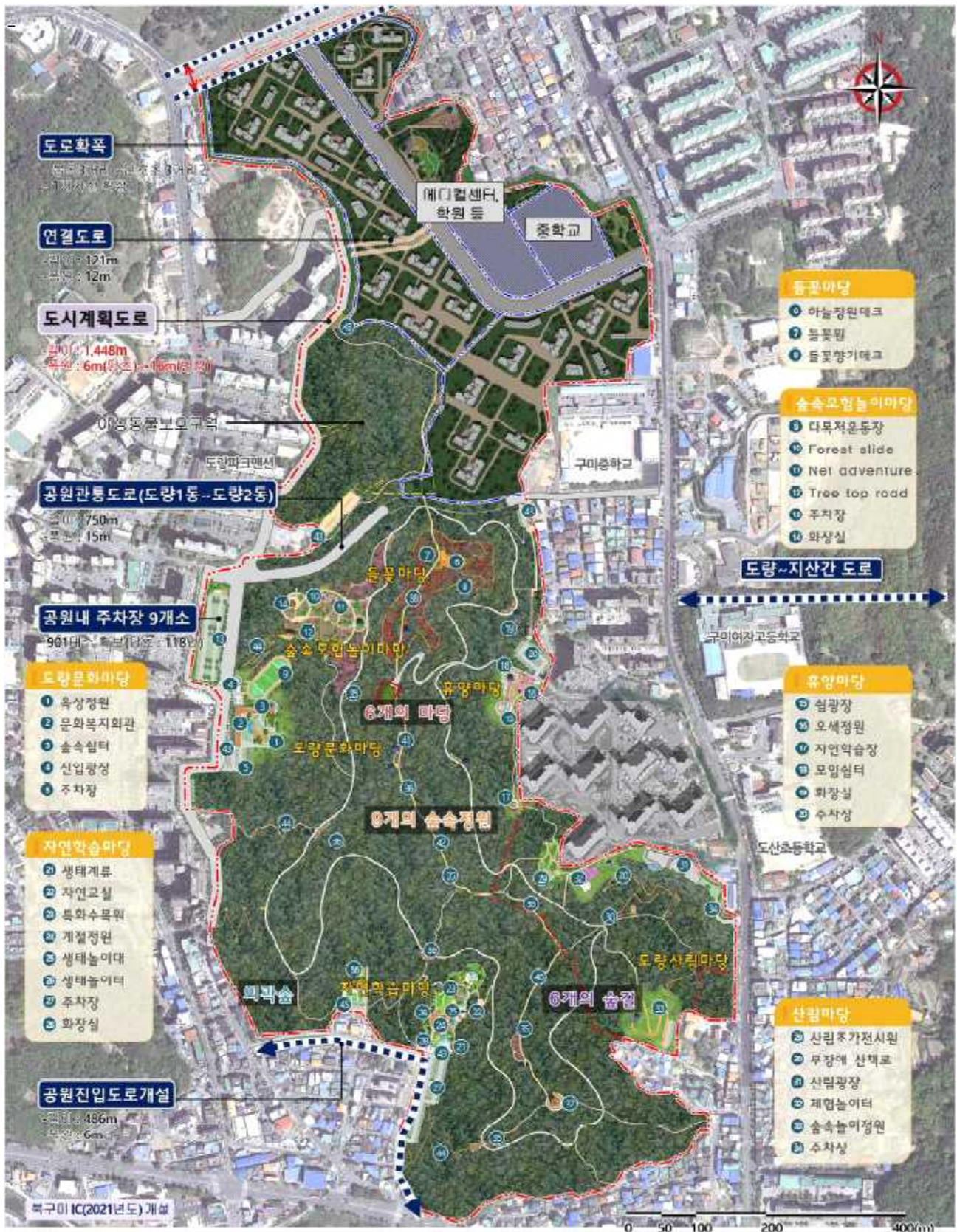


○ 위 성 지 도



○ 공원조성계획

• 기정



- 변경

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제6항,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2조제7항,
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2제9항

5. 검토의견

- 본 「구미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결정(변경)에 대한 의견제시」의 건은,
 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도시계획 절차상 용도지역 변경 결정 전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,
 - 민간에서 추진하는 공원사업의 비공원시설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은 행정절차상 진행되어야 하는 행정행위로서 민간공원 사업의 추진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됨.